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95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권인숙·강민정·김철민

민형배 · 신현영 · 양경숙

오영화 • 유미향 • 유후덕

이용선 · 임종성 · 진선미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 학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면서 2019년 12월 현재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 대학1)에 인권센터가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요원하고, 설립된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대학 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 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으

¹⁾ 교육부 2018년, 인권위원회 2019년 자료 취합결과

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여 학교 구원성의 인 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고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 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① 학교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 상담,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④ 인권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당사자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 등의 시정 또는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① 학교는 학생, 교직원 등 학
	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
	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u>다.</u>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
	상담,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교직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
	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
	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되는 인권침해조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④ 인권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 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 등의 시정 또는 개선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 권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 로 정한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교육부장 관은 매년 각 학교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 에게 정책 등의 개선 또는 시 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

은 학교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